

교원 휴직 및 파견근무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학교법인정의학원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 제44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40조에 따라 전임교원(이하 ‘교원’ 이라 한다)의 휴직과 파견근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유) ① 교원의 휴직 사유는 「정관」 제44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총장은 본교의 발전, 학술진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내외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교육, 연구, 학술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교원의 파견이 필요한 경우
2.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등에 교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교원의 파견이 필요한 경우
4. 위 1호 내지 3호의 사유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파견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파견이 본교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파견을 신청하는 교원은 해당 파견이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신청요건) ① 휴직 또는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교원은 본교에 3년 이상 재직하고, 휴직·파견·연구년 복귀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단, 「정관」 제44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의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정관」 제44조 제5호 및 제8호의 사유에 의하여 연구(연수)를 목적으로 휴직하는 교원은 국내외의 연구지원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연구(연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자이어야 한다.

③ 해외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교원은 국가기관, 학술관련기관 및 단체 또는 본교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는 자이어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승인절차) ① 휴직 또는 파견근무를 원하는 교원은 소정의 구비서류(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를 소속 학과(부)장,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회에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명함으로써 행한다.

③ 파견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명함으로써 행한다.

④ 총장은 파견대상자의 적합성, 파견기관 및 파견기간의 적절성, 본교 발전기여도, 소속학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교원을 선정해야 한다.

제5조 (승인의 제한) 연구년, 휴직, 파견근무 등 학교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교원으로 인하여 학과(부서)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휴직 및 파견근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기간) ① 휴직기간은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파견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2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요청기간으로 하되 최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신분) ① 휴직교원의 신분은 「교원인사규정」 제38조를 따른다.

② 파견교원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제8조 (처우) ① 휴직기간 중의 보수, 승급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휴직기간의 임용기간 및 근속연수 산입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제8조 제5항, 제37조를 따른다.

③ 파견교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파견기관에서 파견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파견기관에서 파견교원 보수에 상당하는 기금을 본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견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파견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무지, 근무내용(직책 및 직무 등), 본교에 지급되는 기금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⑤ 파견기간은 임용기간 및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승진, 승봉의 기준이 되는 재직연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복무) ① 휴직 또는 파견된 교원은 그 기간 중에 본교에서 강의, 학생지도 등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단, 학기 중에 휴직 또는 파견이 이루어져 직무를 부득이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의 범위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파견교원은 파견기관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복직 및 복귀) ① 휴직교원의 복직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제41조를 따른다.

② 파견교원은 파견기간 종료 후 즉시 본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③ 복직 또는 복귀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구비서류(별지 제3호 서식)를 복직(복귀)일 1개월 전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총장은 파견교원이 파견기간 중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복귀를 명할 수 있다.

⑤ 학기 중에 복직 또는 복귀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대하여 강의, 학생지도 등의 직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되는 직무내용은 복직 및 복귀시기를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11조 (의무) ① 「정관」 제44조 제5호 및 제8호의 사유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은 복직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교원은 복귀 후 1개월 이내(해외파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파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직교원 또는 파견교원은 휴직 및 파견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본교에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교원은 휴직 및 파견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2조 (교원 연구년 제도와의 관계) 휴직 및 파견교원의 연구년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교원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3조 (세부사항)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규정의 폐지) 교원휴직 및 파견근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구. 교원휴직및파견근무규정 전부개정, <2013 제21차 교무위원회>)